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준오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
노원구 제4선거구 서준오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직접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지난 2월 5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이 조례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▲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▲ 개발행위허가 생태

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▲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.

생태면적률은 2004년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로써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·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.

생태면적률은 '04년부터 서울시의 도시계획·개발사업에 있어서 미기후 조절 및 물순환 기능 확보 통한 도시열섬·홍수 완화,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해왔으며,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구용역('22.4.~'23.5)을 통해 생태면적률 적용의 법률적 근거 강화 및 공공기관 의무 확대 등 생태면적률 제도 정비계획 수립('23.10.) 및 「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」 개정('23.11.20. 시행) 등을 추진하였으나, 도시계획 조례에는 아직 반영되지 못해 지침상 기준과 조례상 기준이 일부 상이한 상황으로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.

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기법인 생태면적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원활한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조례안

에 답았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